

제목	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필요		
소관부서	행자부, 방통위	개선시기	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개인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‘개인정보보호법’ 적용대상 확대 우려
- 개인정보의 추상적 결합 및 무한 확장 가능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
 - 현행 개인정보 규정은 ‘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’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는 등, 추상적 정의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 증대

□ 개선내용

- 관련부처와 협동으로 개인정보 개념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위해 “개인정보 관련부처 통합 법 해설서” 마련

제목	개인정보 사전동의(opt-in) 제도 개선		
소관부서	행자부, 방통위	개선시기	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현행 법제도는 개인정보를 수집·활용 시, 개인에게 구체적 수집 항목 및 목적 등을 고지 및 사전 동의 받도록 의무화
- ICT 일부 분야에 대해 사후거부 방식(opt-out)으로 전환 또는 사전 동의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·활용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산업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
- 현행 법제도는 개인정보를 수집·활용시, 개인에게 구체적 수집항목 및 목적 등을 고지하고 있어, IoT 환경에서는 정보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데이터 수집이 빈번하게 발생함

□ 개선내용

- 사전동의제도(opt-in)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
- ICT환경에 맞추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후거부방식 도입하는 방안 등 검토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

제목	개인정보 규율체계 합리화		
소관부서	행자부, 방통위	개선시기	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현행 개인정보 규제체계는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, 위치정보법 등에서 중복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해석상 어려움 발생
- 현행 법체계는 ICT 융합 분야의 사업자들이 온·오프라인을 겸하는 등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 중복 규제 및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

□ 개선내용

- 법률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부처 개별법령간 용어 및 처리원칙 등이 통일될 수 있도록 추진

제목	개인신용정보 위탁시 의무부과		
소관부서	금융위	개선시기	
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 및 문제점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○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위탁하는 것이 신용정보법상 개인 사전동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신용정보를 위탁을 통해 처리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보고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 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내용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개인 사전동의 예외규정 마련됨 			